



문서번호	기획예산과-391
결재일자	2015.1.1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담 당	예산담당	기획예산과장	기획경제국장	
이정희	김종호	이용식	01/13 전성용	
협 조	재무과장 이기석			

---

##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

---



기획경제국  
기획예산과

#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

2014회계연도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출하지 못한 경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고이월을 추진하여 원활한 예산집행과 사업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

## I 추진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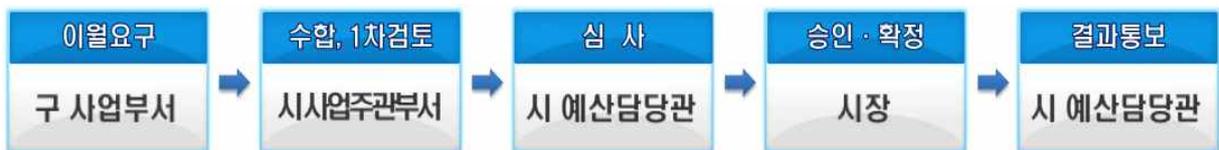
- 지방재정법 제50조,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
-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,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 제17조

## II 추진 방향

- 사고이월 요구사업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이월 규모의 최소화
- 사고이월 유형별 원인분석,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을 도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'15년 재정운용 및 '16년 예산편성에 활용

## III 추진 절차

- 서울시 예산(재배정 예산)



- 우리구 예산(국·시비 보조금 포함)



## IV 사고이월 대상

### ◀ 사고이월 원칙 ▶

사고이월은 '회계연도 독립의 원칙'에 대한 예외로 관련법령이 정한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한해 필요·최소한으로 운영

-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
(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1호)
-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 다음의 경비  
(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)
  - 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
  - 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
  - ③ 대안입찰, 일괄입찰을 위해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
  - ④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
- 공익·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 다음의 경비  
(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2항)
  - ①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·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
  - ②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중인 경비
  - ③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

## V 사고이월 요구시 유의사항

- 2013회계연도 사고이월 예산은 재차 이월 불가 ('15.2.28까지 집행완료)
- 2014년에 원인행위하였으나,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사업에 대해 확인 후 사고이월 요구할 것 (사고이월하지 않을 경우 예산집행 불가)
- 이월예산은 타목적의 용도로 전용 불가
- 지출 승인된 예비비의 세출예산은 이월사유가 충족된다면 이월 가능
- 기타 사유 및 요건이 불분명한 사업은 사고이월 불가

## VI 행정사항

### ■ 사고이월요구서 제출

#### ○ 서울시 예산(재배정예산)

- 제출서류 : 사고이월요구서, 사고이월사업별 명세서

※ 서울시 해당예산 사업주관부서로 원본을 제출하고, 사본 1부를 기획예산과로 제출

#### ○ 우리구 예산(국·시비 보조금 포함) : 2015. 1.23(금) 한

- 제출서류 : 사고이월요구서(서식1), 사고이월사업별 명세서(서식2), 원인행위미필사유서(서식3)
- 재무과장의 협의를 득한 후, 원본 1부를 기획예산과로 제출
-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액은 반드시 관련 회계장부 및 e-호조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정확히 일치하게 기재하고 지출원인행위부, 지출부 반드시 제출
- 사업별로 계약서(변경계약서 포함) 및 준공연기 이행 각서 첨부
- 보상비는 감정평가서, 지번별 평가액 조서 및 계약서, 수용재결서 통보서 등 보상추진과 관련한 근거서류 첨부

## ■ 수정요구서 제출

- 출납폐쇄기간(2월28일)전 지출금액은 사고이월액에서 제외되므로 사고이월  
요구서 제출 후 지출액이 발생될 때에는, 반드시 수정요구서를 제출하여  
결산시 사고이월액이 상이하지 않도록 주의
- 2014회계연도 사고이월 요구사업 지출액 수정요구서 제출 : ' 15.2.23(월)
- 2014회계연도 사고이월 확정 : ' 15. 2.27(금) 예정  
※ 사고이월예산 승인·확정 통보후 이월사업 시행 (사업시행부서)

붙임 2014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계획 세부설명자료 1부. 끝.